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 정 : 2017.01.04.

개 정 : 2018.07.23.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 제58조 제1항에 의거,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, 금융투자업시행세칙 및 그 외 관련 법규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를 말한다.

1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2. 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(법 제86조,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계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
3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4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5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6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7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

8. 환매수수료 :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
9. 투자일임 기본수수료 :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없이 받는 보수
10. 투자일임 성과수수료 :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부과되는 보수

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 ①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③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,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5조 (수수료 부과절차) ①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
②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
④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 중 인상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투자일임수수료의 경우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투자일임 계약서에 따른다.

제6조 (설명의무) 회사는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지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 (공시 및 통보) ①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

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②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지침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

③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그 시기, 금액 등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투자일임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